

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살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11월 30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 5.11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(2007.10. 4)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3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함
(안 제1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취 : 별첨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

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의3제1항”을 “제3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(이하 “도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제38조 제1항.....</p>			

관계법령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